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. 11. 3 선고 2016가단5975 판결 [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10. 20.

판결 선고 2016. 11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,000만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2015. 12. 24. 피고로부터 김천시 C건물 506호를 보증금 6,000만원, 기간 2016. 6.

30.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, 임대차기간이 위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니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.

2.

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한다.

판사이상헌